#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의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홈페이지(www.hillstate-suwonterrace.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은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홈페이지(www.hillstate-suwonterrace.co.kr)를 통해 사전 예약 하신 분에 한정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 공지)에 입장이 가능함.

• 견본주택 방문예약은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홈페이지(www.hillstate-suwonterrace.co.kr)의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하실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제한 및 귀가 조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 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비접촉체온계 운영)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등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입장이 불가함.

※ 서류 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청약자 혹은 당첨 및 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코로나 19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는 상담전화(1600-0767)등을 통해 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나 간혹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및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5.28.(금) 임.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공동주택과-22850호(2021.05.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함.

■ 본 건축물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음.

■ 본 건축물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수원시 공동주택과-22850호(2021.05.27.)]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 분양사업자 : 교보자산신탁㈜ / 분양대행사 : 신일산업개발㈜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 시행위탁자 : ㈜오캄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교보자산신탁㈜
▣ 분양대금 관리지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25-30 일원(서호지구 내 연립주택1 용지)
▣ 공급 대상 : 지하 2층 ~ 지상 4층 13개동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57세대 (별도 분양예정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실))
- 대지면적 : 전체 대지면적 27,523.00㎡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6,627.19㎡
- 연 면 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47,372.84㎡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45,808.26㎡
▣ 용도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차 대수 : 총 382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59대
▣ 준공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 분 | 용도 |
|---|---|
| 지하 1층 ~ 지하 2층 | 주차장, 기계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 지하 1층 | 주민공동시설 |
| 지하 1층 ~ 지상 4층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 주택관리번호 | 군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타입) |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세대수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 2021950025 | 1군 | 55.9365 | 55A | | 55.9365 | 21.8610 | 77.7975 | 45.1008 | 122.8983 | 69.2822 | 2 |
| | | 55.9276 | 55B | | 55.9276 | 21.4686 | 77.3962 | 45.0937 | 122.4899 | 69.2712 | 3 |
| | | 55.9463 | 55C | | 55.9463 | 21.4753 | 77.4216 | 45.1087 | 122.5303 | 69.2944 | 3 |
| | | 55.9463 | 55D | | 55.9463 | 21.4753 | 77.4216 | 45.1087 | 122.5303 | 69.2944 | 3 |
| | 2군 | 84.9415 | 84A | | 84.9415 | 27.2055 | 112.1470 | 68.4872 | 180.6342 | 105.2074 | 13 |
| | | 84.9146 | 84B | | 84.9146 | 26.7678 | 111.6824 | 68.4656 | 180.1480 | 105.1741 | 53 |
| | | 84.8836 | 84F | 지하 1층 | 46.1992 | 28.5413 | 113.4249 | 68.4406 | 181.8655 | 105.1357 | 37 |
| | | | | 지상 1층 | 38.6844 | | | | | | |
| | 3군 | 84.8814 | 84C | | 84.8814 | 27.0795 | 111.9609 | 68.4388 | 180.3997 | 105.1330 | 53 |
| | | 84.8814 | 84D | | 84.8814 | 27.0795 | 111.9609 | 68.4388 | 180.3997 | 105.1331 | 53 |
| | | 84.8614 | 84E | 지하 1층 | 51.1476 | 28.1287 | 112.9901 | 68.4228 | 181.4129 | 105.1082 | 37 |
| | | | | 지상 1층 | 33.7138 | | | | | | |
| 합계 | | | | | | | | | | | 257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천원)

| 군 | 약식 표기 (타입) | 동·호 | 공급 세대 수 | 층 구분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 | | 21.09.16. | 21.12.16. | 22.03.16. | 22.06.16. | 22.09.16. | 22.12.16. | 입주지정일 |
| 1군 | 55A | 107동 1호<br>113동 15호 | 2 | 1 | 211,158 | 446,042 | 657,200 | 65,720 | 65,720 | 65,720 | 65,720 | 65,720 | 65,720 | 65,720 | 197,160 |
| | 55B | 107동 1,4호<br>113동 8호 | 3 | 2 | 205,857 | 434,843 | 640,700 | 64,070 | 64,070 | 64,070 | 64,070 | 64,070 | 64,070 | 64,070 | 192,210 |
| | 55C | 107동 1,4호<br>113동 8호 | 3 | 3 | 208,042 | 439,458 | 647,500 | 64,750 | 64,750 | 64,750 | 64,750 | 64,750 | 64,750 | 64,750 | 194,250 |
| | 55D | 107동 1,4호<br>113동 8호 | 3 | 4 | 223,239 | 471,561 | 694,800 | 69,480 | 69,480 | 69,480 | 69,480 | 69,480 | 69,480 | 69,480 | 208,440 |
| 2군 | 84A | 102동 1,2,3,4호<br>104동 1,2,3,4호<br>109동 2,4호<br>110동 2,3,4호 | 13 | 1 | 320,400 | 676,800 | 997,200 | 99,720 | 99,720 | 99,720 | 99,720 | 99,720 | 99,720 | 99,720 | 299,160 |
| | 84B | 101동 1,2,3,4호<br>102동 1,2,3,4호<br>103동 1,2,3,4호<br>104동 1,2,3,4호<br>105동 1,2,3,4호<br>106동 1,2,3,4호<br>107동 2,3호<br>108동 1,2,3,4호<br>109동 1,2,3,4호<br>110동 1,2,3,4호<br>111동 1,2,3,4호<br>112동 1,2,3,4호<br>113동 1,2,3,4,5,6,7호 | 53 | 2 | 297,042 | 627,458 | 924,500 | 92,450 | 92,450 | 92,450 | 92,450 | 92,450 | 92,450 | 92,450 | 277,350 |
| | 84F | 101동 1,4,5,8호<br>103동 1,4,5,8호<br>105동 1,4,5,8호<br>106동 1,4,5,8호<br>107동 3,4호<br>108동 1,4,5,8호<br>111동 1,4,5,8호<br>112동 1,4,5,8호<br>113동<br>1,4,5,8,9,12,13호 | 37 | 지하1층<br>~<br>1층<br>(복층) | 283,322 | 598,478 | 881,800 | 88,180 | 88,180 | 88,180 | 88,180 | 88,180 | 88,180 | 88,180 | 264,540 |
| 3군 | 84C | 101동 1,2,3,4호 | 53 | 3 | 300,897 | 635,603 | 936,500 | 93,650 | 93,650 | 93,650 | 93,650 | 93,650 | 93,650 | 93,650 | 280,950 |

| | | | | | | | | | | | | | | | |
|---|---|---|---|---|---|---|---|---|---|---|---|---|---|---|---|
| | | 102동 1,2,3,4호<br>103동 1,2,3,4호<br>104동 1,2,3,4호<br>105동 1,2,3,4호<br>106동 1,2,3,4호<br>107동 2,3호<br>108동 1,2,3,4호<br>109동 1,2,3,4호<br>110동 1,2,3,4호<br>111동 1,2,3,4호<br>112동 1,2,3,4호<br>113동 1,2,3,4,5,6,7호 | | | | | | | | | | | | | |
| | 84D | 101동 1,2,3,4호<br>102동 1,2,3,4호<br>103동 1,2,3,4호<br>104동 1,2,3,4호<br>105동 1,2,3,4호<br>106동 1,2,3,4호<br>107동 2,3호<br>108동 1,2,3,4호<br>109동 1,2,3,4호<br>110동 1,2,3,4호<br>111동 1,2,3,4호<br>112동 1,2,3,4호<br>113동 1,2,3,4,5,6,7호 | 53 | 4 | 372,804 | 787,496 | 1,160,300 | 116,030 | 116,030 | 116,030 | 116,030 | 116,030 | 116,030 | 116,030 | 348,090 |
| | 84E | 101동 2,3,6,7호<br>103동 2,3,6,7호<br>105동 2,3,6,7호<br>106동 2,3,6,7호<br>107동 2,5호<br>108동 2,3,6,7호<br>111동 2,3,6,7호<br>112동 2,3,6,7호<br>113동<br>2,3,6,7,10,11,14호 | 37 | 지하1층<br>~<br>1층<br>(복층) | 282,230 | 596,170 | 878,400 | 87,840 | 87,840 | 87,840 | 87,840 | 87,840 | 87,840 | 87,840 | 263,520 |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상품임.

※ 총 분양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도시형생활주택의 각 세대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여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의 합산면적과 분양면적의 합산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면적과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제곱미터(㎡) 미만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세대별로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면적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복층타입 (84E, 84F)의 전용면적은 지하1층(데크층)과 1층의 전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타입별 발코니 면적은 상이하며,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 초과 면적이 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전체 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시설(도시형생활주택,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사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도서 층별 면적산출근거표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함. 단, 단순 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1제곱미터(㎡) 미만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음.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됨.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 지정 및 구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됨.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잔금 대출 알선 없음)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가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수원시, 권선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T.1600-0767)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8)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은 각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로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 가능함.(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2건 이상 중복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함.)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함. (은행창구 직접 접수 시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됨.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공급일정

| 구분 | 일정 | 장소 |
|---|---|---|
| 청약일 | 2021년 06월 07일 월요일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
| 당첨자발표 | 2021년 06월 10일 목요일 16:00시 이후 | |
| 계약일 | 2021년 06월 14일 월요일 ~ 16일 수요일 (10:00 ~ 16:00) |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견본주택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7)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에서 '청약Home' 검색]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은행(KB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람.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함.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함.

▣ 청약신청 안내

| |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 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br>→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 시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 |
|---|---|
| |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구분 | 청약신청금 | 납부방법 |
|---|---|---|
| 모든 군 공통 | 1,000,000원<br>(금 일백만원정) | • 청약 신청 시 : 청약 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KB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KB국민은행 전 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청약신청금<br>•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br>•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음.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

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됨.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함.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함.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1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 제한됨.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당첨자 발표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1년 06월 10일 목요일 16:00시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 당첨자 안내사항

| | |
|---|---|
|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br>•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부정당첨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br>•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분 | 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Ⅲ 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부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1년 06월 14일 월요일 ~ 16일 수요일 (계약체결시간 10:00 ~ 16:00)
- 계약장소 :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견본주택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7)

▣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KB국민은행 | 476790-73-000015 | 교보자산신탁㈜ |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1동 202호 당첨자 홍길동 → 101202홍길동 |
| 중도금/잔금 | KB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교보자산신탁㈜ | |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KB국민은행 165801-04-407428,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됨.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101동 2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202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음.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함.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사항

| 구분 | 구비사항 |
|---|---|
| 본인 계약 체결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br>•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br>• 주민등록등본<br>•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br>-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 법인 계약 시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br>•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br>•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br>※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br>※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br>-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br>-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 위임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함.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름.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권선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중도금 대출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 가능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함.
- 입주지정기간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한 대출이자 및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실 입주시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 및 금리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상 고지된 중도금 납부일정 및 비율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입주 시 잔금담보대출은 개인의 소득 (DTI 등), 정부시책, 대출취급기관 상황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총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발급여부에 따라 대출 알선조건이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또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은 금리 적용 및 신용 등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며,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야하며(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재외동포의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외국인 및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불가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57조의2에 해당되는 입주자 거주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주택담보대출) 대출시, 소유권 등기 이전일부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니 꼭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제한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노사분규(연관 업체 포함), 주요질병(코로나19 등),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됨.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되는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Ⅳ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의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판매 일정은 별도 통보 할 예정.
※ 발코니 확장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계약시 | 21.09.16. | 입주지정일 | |
| 55㎡ | A,B,C,D | 13,500,000 | 1,350,000 | 1,350,000 | 10,800,000 | |
| 84㎡ | A,B,C,D | 17,000,000 | 1,700,000 | 1,700,000 | 13,600,000 | |
| | E | 15,000,000 | 1,500,000 | 1,500,000 | 12,000,000 | |
| | F | 13,500,000 | 1,350,000 | 1,350,000 | 10,800,000 |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함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가구, 디자인,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 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 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개별 시공함에 있어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내부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단위세대 타입 및 층별로 발코니 확장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타입 계약 체결 전, 확장/비확장 공간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기본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가전옵션 및 가구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시공 품질에 따라 설치된 난방용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선택 시 발코니 창은 설치되지 않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선택 시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선택 시 인접 확장세대 확장 발코니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 안목치수(수평,수직)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전기기구, 통신기구 등의 제품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위치, 벽체두께, 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헤드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세대가 비확장세대인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선택 사항(무상 품목)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선택1 | 선택2 | 비고 |
|---|---|---|---|---|---|
| 55㎡A,B,C,D | 욕실2(안방) | 욕실2 / 드레스룸 선택 | 욕실2 | 드레스룸 | |
| 84㎡A,B,C,D | 침실1(안방) | 파우더 가구 디자인 선택 | 좌식파우더 | 입식파우더 | |

▣ 시스템에어컨 (무상 및 유상 품목) (단위: 원 / VAT포함)

| 구분 | 약식표기 (타입) | 선택안 | 설치개수 | 유·무상품목 및 설치위치 |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유상 | 무상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일반형 [공기청정기능 無] (삼성제품) | 55㎡A,B,C,D | 1 | 3 | 침실2 | 거실/주방, 침실1 | 1,100,000 | 110,000 | 110,000 | 880,000 | |
| | 84㎡A,B,C,D | 1 | 5 | 침실2, 침실3 | 거실, 주방, 침실1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 2 | 6 | 침실2, 침실3, 서재 | 거실, 주방, 침실1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건식욕실 선택시 |
| | 84㎡E,F | 1 | 5 | 침실2, 침실3 | 거실, 주방, 침실1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공기청정형 (삼성제품) | 55㎡A,B,C,D | 1 | 3 | 침실2 | 거실/주방, 침실1 | 2,200,000 | 220,000 | 220,000 | 1,760,000 | |
| | 84㎡A,B,C,D | 1 | 5 | 침실2, 침실3 | 거실, 주방, 침실1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 | 2 | 6 | 침실2, 침실3, 서재 | 거실, 주방, 침실1 | 5,600,000 | 560,000 | 560,000 | 4,480,000 | 건식욕실 선택시 |
| | 84㎡E,F | 1 | 5 | 침실2, 침실3 | 거실, 주방, 침실1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 시스템 에어컨은 단일제품으로 시공되며, 타사제품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시 전용면적 55㎡는 기본제공 시스템 에어컨 2대 (거실/주방, 침실1)에 대하여 2개소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시공되며, 84㎡의 경우 기본제공 시스템 에어컨 3대 (거실, 주방, 침실1)에 대하여 3개소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시공됨.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선택 시 기본제공 시스템 에어컨은 제공되지 않으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도 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타입의 전용면적 55㎡ 2대(거실/주방, 침실1), 전용면적 84㎡ 3대(거실, 주방, 침실1) 시스템 에어컨 및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삼성전자)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전용면적 55㎡(거실/주방, 침실1), 전용면적 84㎡(거실, 주방, 침실1)은 공기청정기능 없는 제품으로 기본 설치 되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시공에 포함함.
-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 미선택시 무상 옵션 이외의 실에는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유상옵션 선택은 공기청정기능 유, 무 선택이 가능하며, 공기청정기능 옵션 선택시 무상옵션의 공기청정기능 없는 제품을 공기청정기능 제품으로 변경되며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 시공에 포함함.

- 84A, B, C, D 타입의 건실욕실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적용 시 서재에 시스템 에어컨 적용함.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 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클린시스템 패키지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전 타입 | 현관, 주방 | 현관에어클린시스템+에어브러쉬+전해수살균수전(개수대1개소)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프리미엄키친 패키지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55㎡A,B,C,D | 주방 | 주방가구(놀테-독일), 수입 싱크볼(레지녹스), 수입 수전(제시)<br>+주방 상판/벽(수입 세라믹타일)+수입 후드+BI김치냉장고(삼성) | 29,800,000 | 2,980,000 | 2,980,000 | 23,840,000 | |
| 84㎡A | | | 49,700,000 | 4,970,000 | 4,970,000 | 39,760,000 | |
| 84㎡B,C | | | 38,700,000 | 3,870,000 | 3,870,000 | 30,960,000 | |
| 84㎡D | | | 39,800,000 | 3,980,000 | 3,980,000 | 31,840,000 | |
| 84㎡E | | | 42,900,000 | 4,290,000 | 4,290,000 | 34,320,000 | |
| 84㎡F | | | 35,700,000 | 3,570,000 | 3,570,000 | 28,560,000 | |

▣ 프리미엄가구 패키지 I (드레스룸 가구)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84㎡A,B | 침실1 |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 선반 | 7,900,000 | 790,000 | 790,000 | 6,320,000 | |
| 84㎡C,D | | | 8,900,000 | 890,000 | 890,000 | 7,120,000 | |
| 84㎡E | | | 2,300,000 | 230,000 | 230,000 | 1,840,000 | |

| | | | | | | | |
|---|---|---|---|---|---|---|---|
| 84㎡F | | | 3,300,000 | 330,000 | 330,000 | 2,640,000 | |

▣ 프리미엄가구 패키지 II (침실1 붙박이장)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0%) 2021.09.16. | 잔금(80%) 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B,C,D,F | 침실1 | 매직슬라이딩 (고급, 한샘넥서스 파네스) | 7,920,000 | 792,000 | 792,000 | 6,336,000 | |
| 84㎡E | | 여닫이 (고급, 한샘넥서스 파네스) | 2,350,000 | 235,000 | 235,000 | 1,880,000 | |

▣ 프리미엄가구 패키지 III (침실2 붙박이장)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0%) 2021.09.16. | 잔금(80%) 입주지정일 | 비고 |
|---|---|---|---|---|---|---|---|
| 84㎡ A,B,C,D | 침실2 | 침실2 붙박이장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미선택시 기본형 |
| 84㎡ E | | 침실2 붙박이장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미선택시 기본형 |
| 84㎡ F | | 침실2 붙박이장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미선택시 기본형 |

▣ 프리미엄마감 패키지(현관,거실,주방 바닥타일, 아트월, 계단실 벽)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0%) 2021.09.16. | 잔금(80%) 입주지정일 | 비고 |
|---|---|---|---|---|---|---|---|
| 55㎡A,B,C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 수입 세라믹 타일 | 8,800,000 | 880,000 | 880,000 | 7,040,000 | |
| 55㎡D | 현관, 거실,주방, 계단실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계단실 벽체(1면) 수입 세라믹 타일 | 12,700,000 | 1,270,000 | 1,270,000 | 10,160,000 | |
| 84㎡A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 수입 세라믹 타일 | 10,700,000 | 1,070,000 | 1,070,000 | 8,560,000 | |
| 84㎡B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 수입 세라믹 타일 | 11,800,000 | 1,180,000 | 1,180,000 | 9,440,000 | |
| 84㎡C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 수입 세라믹 타일 | 10,700,000 | 1,070,000 | 1,070,000 | 8,560,000 | |
| 84㎡D | 현관,거실,주방 , 계단실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계단실 벽체(2면) 수입 세라믹 타일 | 18,700,000 | 1,870,000 | 1,870,000 | 14,960,000 | |
| 84㎡E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계단실 벽체(1면) 수입 세라믹 타일 | 24,800,000 | 2,480,000 | 2,480,000 | 19,840,000 | |
| 84㎡F | 현관,거실,주방 | 현관 바닥+거실/주방 바닥+거실 아트월 수입 세라믹 타일 | 18,700,000 | 1,870,000 | 1,870,000 | 14,960,000 | |

▣ 스마트 스페이스 패키지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0%) 2021.09.16. | 잔금(80%) 입주지정일 | 비고 |
|---|---|---|---|---|---|---|---|
| 84㎡A,B,C,D | 침실1 | 건식욕실+서재 (바닥:수입 타일,벽:수입 세라믹타일,가구:세면대 상하부장, 유색 | 4,700,000 | 470,000 | 470,000 | 3,760,000 | |

| | | | | | | | |
|---|---|---|---|---|---|---|---|
| | | 풀파티션 샤워부스) | | | | | |

▣ 주방가구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선택형)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전 타입 | 주방 | 오븐수납장 시스템 + BI김치냉장고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 | | 수납장(내부 서랍형)+수납장(내부 서랍형) | 1,700,000 | 170,000 | 170,000 | 1,360,000 | |
| | | 비스포크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수납장(내부 서랍형) | 5,900,000 | 590,000 | 590,000 | 4,720,000 | |

※ 김치냉장고장+냉장고장 선택형은 옵션 중 택1로 중복 선택 불가

※ 프리미엄키친 패키지 적용 시 선택 불가

▣ 주방가전(인덕션, 오븐, 식기세척기) (단위: 원 / VAT포함)

| 약식표기 (타입) | 위치 | 품목 | 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비고 |
|---|---|---|---|---|---|---|---|
| | | |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 전 타입 | 주방 | 인덕션 3구(셰프컬렉션 NZ63R9770TG) | 1,790,000 | 179,000 | 179,000 | 1,432,000 | |
| | | 오븐 (셰프컬렉션 MZ385EBT) | 1,640,000 | 164,000 | 164,000 | 1,312,000 | |
| | | 식기세척기 (12인용, 삼성 DW60T7065SS) | 190,000 | 19,000 | 19,000 | 152,000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조건 및 일정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납부 시기 | 계약시 | 2021.09.16. | 입주지정일 |
| 납부 금액 | 10% | 10% | 80% |

▣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 구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KB국민은행 | 476790-73-002598 | 교보자산신탁㈜ | 입금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1동 202호 당첨자 홍길동 → 101202홍길동 |
| 중도금/잔금 | KB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교보자산신탁㈜ | |

-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KB국민은행 811401-04-310157, 교보자산신탁(주))로 관리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202호 홍길동→'101202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

기 바람.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주 시 개별 납부)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Ⅴ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사업지는 도시형생활주택 257세대,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차량주출입구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수분양자는 공동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이를 반영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 0.3025)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촬영, 보관 예정임.
•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의 변경, 폐지 또는 재설정은 입주 이후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따라야 함.
•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 현황이나,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벽체,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분양면적 증감이 없는 시설물 배치, 구획(칸막이)변경, 입면도상의 마감자재의 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또는 분양 자료와 상이한 부분은 최종 승인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사업승인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행위(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공급자는 위 표시물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당시의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관련 인·허가,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단, 엘리베이터 등 소방/피난 관련 시설은 비상시나 관리용으로 타 시설과 공유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 상의 기준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허가 상의 제반조건 및 법규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자 및 입주자에게 준수의 의무가 있음.
• 본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사업주체의 브랜드, 로고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 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본 분양목적물 관련시설 건물 및 단지 내·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분양목적물의 배치, 구조 및 세대별 위치, 향과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본 분양목적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허가 변경 및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스마트모빌리티보관소,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공간, 자전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유시설(자전거보관소, 방재실 등) 및 대지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임.
- 테라스와 지붕은 허가 및 분양시점의 도서와 설비의 반영 및 실시설계도서의 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지 남측의 차량주출입구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로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구분되어 있으나 단지 진입 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과 공동 사용함에 따른 혼잡, 통행불편,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음.
- 부지 서측, 북서측의 노외주차장으로 인해 인접한 동(107동, 108동, 109동 등)은 차량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서 및 각종 홍보물에는 본 건물의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지하주차장 휀룸 및 발전기실, 펌프실 등의 D/A와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시공사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27개월) 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수분양자 및 입주자는 관련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비행기 소음 등),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마감재, 창호 유리/프레임 및 돌출 루버 디자인,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동측, 남측 및 북측에 다른 건물이 인접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환기, 조망권, 소음 등이 심각할 수 있으니, 해당 세대 및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지하주차대수는 382대(공동주택 359대,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은 SL+53.0~SL+60.8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SL+49.0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토록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다만 SL+49.0 지하주차장의 차량주출입구에서부터 시설간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한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 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사업지 남서측 수인로변과 109동 후면 일부, 113동 전면 일부의 단지경계 부분에 방음벽(H:5~9m)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조망, 일조, 환기 등이 간섭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음벽의 높이는 5m~9m 이며 안접접합유리를 활용한 투명방음판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의 높이, 설치위치, 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휀룸#3, 휀룸#6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방음벽은 본 사업지 내에 설치되며 추후 방음벽의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부담임
-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로비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D/A(설비 환기구), 특화펜스,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음.

- 적층되는 상부세대의 위치에 따라 발코니 및 다용도실 천장에 단차가 형성되는 구간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디지털도어락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공급안내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시공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공용공간, 주차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명칭은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이며, 행정구역상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경관조명, 옥상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은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공급안내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물(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스마트모빌리티보관소, D/A, 소화전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E/V와 인접한 실의 경우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해당 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붕 및 외부의 난간은 실 시공시 위치에 따라 난간이 설치되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창호는 법적 기준의 단열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나, 당 사업지의 경우 결로방지성능평가 대상이 아닌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세대에서 환기 등의 방법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함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유리사양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급배기시설, D/A(환기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분진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주변 도로, 주변 건물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 시공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등) 창호를 통해 인접동의 세대에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그 외층의 기준이 상이함.
- 단지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외부경사로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부지의 지상 전기 및 통신 분야의 선로의 지중화는 건축허가조건 사항이므로, 이를 이행하는 전력공급 및 통신 관련 시설에 대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창호 돌출 프레임, 테라스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외부에서 지하층, 지상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힐스테이트 심볼의 야간 조명설치에 따라 인접세대와 보행자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설치되는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세대는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옥상정원,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면도로와 인접한 실은 소음, 분진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람.
- 본 건축물에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인증(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음.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람.
- 추후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시설)적인 소음, 냄새, 사생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원공군기지의 군용기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부담으로 편의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목적의 어플리케이션(플랫폼)을 구축 및 제공할 예정이며,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은 입주민(사용자) 본인 부담임. 또한, 운영업체의 사정으로 컨시어지 서비스는 일부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 컨시어지 서비스 관련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어플리케이션(플랫폼)만을 제공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관리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지구단위계획 및 법규, 단지 내·외부 여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30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알려드리니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차로 이상인 도로 : 수인로, 수인로 192번길, 금호로, 단지 남측 23M 도로 (신설 예정)
- 공원 : 구운공원, 여기산공원, 구운3호 어린이공원
- 유류저장시설 : GS칼텍스 진흥주유소
- 학교 :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 공공청사 : 수원도시공사,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 사회복지시설 : 서호노인복지관
- 저수지 : 축만제 (서호)
- 본 사업지는 도시관리계획(서호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조성하며 상위계획의 변동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현황은 도시관리계획(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준수하여 표현함)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가로수, 자전거도로, 등) 및 지형(옹벽 - 서호지구 특별계획구역1 생태마을 조성예정 지역)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허가일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0항에 따라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2항, 제13조(기준척도)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주변도로, 인접대지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와 건축한계선 사이에 설치되는 보행통로는 관련 기관 협의에 의해 포장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 건축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배치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및 실외기실 배기탑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인접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특화펜스,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경사로, 지하층 환기를 위한 급기, 배기 구조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지하에 설치된 시설(지하저수조, 기계실, 빗물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로 인하여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한 구조물의 급기, 배기 용도 및 위치는 계약전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차량출입구 위치가 제한 및 지정되어 있고 교통 계획에 따라 차량 출입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남측 보행주출입구의 ELEV, 옥외계단1의 최하층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수분양자는 공동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이를 반영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남측 도로변에 계획된 차량주출입구의 진출입 차량에 따라 인근 주동(101동)의 세대에는 차량 소음, 매연, 현휘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외부의 레벨차(약8~9m)로 인해 보행자용 단지 출입구 위치가 지정되어 있으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레벨차로 인해 단지 내부에 경사로 및 옹벽이 형성돼 보행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분진,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간격 및 주동과 단지내 도로, 시설물(게이트웨이, 계단실, 티카페, 옥외엘리베이터, 재활용품보관소 등) 등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아 소음, 채광, 냄새, 환기,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에서의 이동은 외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와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위치는 사용성, 미관, 옥외배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수경시설로 인하여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상의 문제로 동절기 등에는 가동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 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모형에 표현된 휴게시설물, 놀이시설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형태나 규모는 단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의 경우 접근성에 있어 다른 주동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음.
- 107동과 108동 사이에 있는 단지북측의 비상차량 출입구는 소방차, 이삿짐 차량 등이 출입하는 출입구로서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외부경사로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창호 돌출 프레임, 테라스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면도로와 인접한 실은 소음, 분진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2. 주동
- 공동주택 1층 로비 및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상, 지하층 로비/복도의 계획, 창호형태 및 높이, 상부 캐노피 등의 형태, 재료, 디자인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ELEV.홀 천장마감은 세대 스프링클러배관 계획에 따라 조정 및 삭제될 수 있음.
- 옥상 난간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1층, 지하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외벽면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 적용에 따라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 치수만큼 축소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는 아파트 디자인 계획상 아파트 골조외 별도의 장식물 등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주변세대에서는 외부 조망 시 장애가 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는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허가 도면상 계획된 캐노피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및 지붕프레임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101동, 113동 1층(복층)세대의 테라스 하부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및 위치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101동, 113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설치되어 있어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실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상 줄눈의 간격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줄눈 틈에 실란트 시공되지 않음. (1층 주출입구 캐노피 상단, 옥상, 옥탑 등 해당)
- 지붕층 난간의 형태와 설치위치는 안전성과 입면디자인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외부에서 지하층, 지상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공용부 홀, 복도폭,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옥탑, 지붕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의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직하부에 지하주차 차량통로가 계획되거나, 램프와 인접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이 각 동의 홀(1층 홀과 일부 지하층 홀은 제외)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크기, 사양, 디자인 등 이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전기차 충전장치(완속 2대), 자전거 보관소, 무인택배함, 등은 각 주동 공용홀 또는 세대 현관에서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Ⅶ- 0.218g 임.

3. 세대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의 생활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발코니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의해 창호 제작사, 형태, 사양 및 규격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마감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조적 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설치부분의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크기, 재질 및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상,하부 세대의 화장실 및 주방 위치가 상이함에 따라 배관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 및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다용도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세대 위치에 따라 발코니, 테라스 벽면 마감의 색상, 재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타입별 테라스 면적은 상이하므로 계약전 단위세대 평면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수전의 위치, 바닥 타일 나누기는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세탁기 설치공간에 건조기를 세탁기 위에 적층시 건조기에 의해 창문이 가려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및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다소 돌출될 수 있음.
- 적층되는 상부세대의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의 천장에 단차가 형성되는 구간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상하/좌우 인접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일부 발코니 벽체 마감선이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 거실과 침실의 천장고는 2.5M이므로 필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 세대 비확장 또는 상부가 외부에 직접 노출될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천장형에어컨위치(옵션선택 시),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고 일부가 낮아질 수 있음.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축소되어 시공되며, 매립 및 마감을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슬라이딩문 등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 브랜드는 본 공사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또는 해당제품 생산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하자 방지와 문틀 마감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모델하우스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음.
- 확장되는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면적이 축소되어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되어질 수 있음.
- 실내외 재료마감표와 타 도면의 재료 표기가 상이한 경우 실내외재료마감표를 우선시 함.

-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와,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 (세대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공사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외부창호는 일부 창호가 고정되어 있어 이사시 가구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는 향후 협력업체 선정결과 및 구조시험 결과에 따라 프레임, 유리, 손잡이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벽,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는 천장결로방지단열재 설치하지 않으며, 최상층 실외기실은 천장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주택단지 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1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 (112동, 111동)는 진동,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배기장치로 인한 당해 세대 및 인접세대의 진동,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테라스에 면한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상부세대의 우수 또는 배수를 위한 수직관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에 설치되는 조경 및 기타시설물 설치로 인해 소음, 조망, 접근성 등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 113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설치되어 있어 상가의 운영 및 통행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동호수 및 위치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84C타입의 알파룸(발코니4) 후면에 돌출된 공간은 상하부 세대의 형태 차이에 의해 발생된 공간으로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며, 추후 실시공시 마감, 턱높이, 우수처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테라스는 공용부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세대 구분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위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사적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함. 향후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위 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분양사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테라스 건축 기본마감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테라스 상부의 허용 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 세대 및 테라스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함.
- 2층 세대의 테라스는 바닥마감 높이 및 세대창문의 골조턱의 높이가 다른 세대의 테라스와 상이하며 이로 인해 테라스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있을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이 84E, 84F의 복층세대일 경우 2층세대인 84B에 설치된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세대가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함. 또한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이를 따라야 함.
- 복층세대(84E, 84F) 침실3 후면의 DA는 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 부분임. 입주자가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테라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55D, 84D타입의 다락은 난방배관 및 냉방설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4층 세대는 실내 또는 외벽에 소방법에 의해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이는 소방법상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추후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하부 일부 세대는 우수드레인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테라스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우수 처리를 위한 드레인만 계획됨.
- 테라스와 실내공간 사이에는 골조턱이 설치되며 턱의 높이는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테라스와 연접한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테라스 외측으로 난간이 설치됨.
- 테라스의 바닥 타일의 종류 및 타일 나누기는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 외측의 파라펫 높이 및 난간 형태, 난간 높이는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에 직접적으로 면한 창호의 경우 수동잠금장치가 적용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테라스 공간은 상하부 또는 인접한 세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층세대 중 84F타입은 자동문을 통한 공동현관없이 외부에서 현관문으로 직접 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및 위치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복층세대 중 84E타입의 세대 진입은 주동 1층 홀에서 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및 위치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복층세대인 84E, 84F타입은 지하주차장 접근 및 무인택배함, 우편물수취함 등 공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복층세대인 84F타입이 있는 각 주동(101, 103, 105, 106, 107, 108, 111, 112, 113동)의 입주자들은 84F타입 세대의 주동 공용 홀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이를 반영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복층세대의 상부층과 하부층의 이동은 세대 내부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계단의 구조 및 난간 형태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55D, 84D의 다락으로의 이동은 세대 내부 계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계단의 구조 및 난간 형태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84㎡ E/F타입의 경우 침실 발코니가 없어 전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시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인접세대(107, 111, 112동)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동호수 및 위치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옵션) 세라믹타일의 패턴은 본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에 연접한 테라스 및 화단(84B 일부), DA(84E, 84F)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용 부분으로써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동호수 및 위치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층세대의 하부층 테라스와 1층 세대의 테라스의 높이는 단지비상차도와 동일하거나 600mm이내 단차가 형성되어, 사용시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단수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1제곱미터(㎡) 미만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 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1)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2) 외부시설

- 본 공동주택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109동, 110동 지붕에는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규격, 용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선큰,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공용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공동주택 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수 있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부대복리 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차량주출입구의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썬큰, 티카페,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의 실외기 설치는 해당시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티카페의 실외기 설치는 지반층의 썬큰 외곽부분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옥외승강기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세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은 주차 가능대수 범위 내에서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은 SL+53.0~SL+60.8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SL+49.0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함. 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 설비와 SL+49.0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은 외부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동선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있음. 수분양자는 공동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도 이를 반영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레벨별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음.
- 진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설치되는 방화셔터의 위치 및 형식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클린스테이션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나, 데크 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공간임.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 및 상가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후 향후 원래의 시설로 사용됨.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음.

4)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도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미설치되거나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공동주택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5) 기타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함.

6) 소음 및 주변민원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2동 좌측면, 104동 좌측면, 107동 후면, 108동 후면, 112동 좌측면에 설치될 예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근접해있어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및 차량 진입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재활용 창고,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는 111동/112동 사이, 107동 후면부에 위치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각 동 필로티 및 동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이 발생될 수 있음.
- 111동/112동 사이에는 티카페 및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진동,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광고·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조감도,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점검구의 추가설치,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모형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본 분양목적물, 주변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건물 모형의 조경 및 식재계획,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CG상에 표현된 시설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연출된 사항으로 집기(테이블, 파고라, 상가 복도 테이블)등의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서둔동 256-1 등 일원 여기산공원 산림지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정조수서식보호구)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 (경기도기념물 201호)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 (테니스장, 축구장 등)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오니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사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건립실 천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 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됨.(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테라스 난간 및 바닥 데크는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연출용으로 본공사시 난간대의 형태 재질,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여건 유의사항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입면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자문 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각 시설용도에 따른 대지구획을 할 수 없음. 또한, 상가의 특성상 대지지분과 실제 사용 가용부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계약전 이러한 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상층간의 이동은 외부 계단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 계약자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에 따른 외장재 시공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외장재 차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에 비해 외장재의 돌출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외관 및 색상, 내부 바닥 패턴 및 색상, 자재는 추후 본 공사시 지정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면공지, 보행자통로, 조경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공용부의 엘리베이터, 계단에 접한 점포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창호 돌출 프레임, 테라스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단,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 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입주자간의 협의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광역도로 등 교통망, 인근 개발사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착공 이후 수원시 권선구 관리부서(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준공 전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유의사항**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설계변경 포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이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허가도면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하여 시공됨.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음.
- 타입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타입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타입 가스배관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세대별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등은 세대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타입의 창호 등 사이즈는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가구는 수입 주방가구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디자인 및 구성이 상이하니 계약시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가구는 고급형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디자인 및 구성이 상이하니 계약시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타일은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음.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세대 현관문 및 타입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하부는 판넬히팅 제외됨.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대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 (워크인 타입 등)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공급안내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음. (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함.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키는 세대당 1개 지급 기준임. (추가 필요 시 입주자는 별도 구매 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분전반/세대단자함,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조정은 불가함.
- Hi-oT(=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음성/디밍제어 스위치의 경우 음성제어 기능은 조명 ON/OFF 기능에 한 하며, 각 침실, 주방 조명에 설치됨. 디밍제어는 각 침실조명에만 해당 하오니 사전에 인지 바람.
- 거실 팬던트 조명이 설치 되는 세대의 경우, 모델하우스에 건립된 타입 외의 이형 타입은 유사한 컨셉의 다른 조명으로 변경 되오니, 사전에 인지 바라며,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디자인에 대하여 변경은 불가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보행 출입구 108동 인근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음.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를 위한 소방시설로 본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고, 위치,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시공성과 관계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난방 요금이 부과되며, 각 세대별 냉방, 난방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단위세대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화장실 천장내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 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 마감자재(양변기, 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입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 등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전용면적 55㎡ 2대(거실/주방, 침실1), 전용면적 84㎡ 3대(거실, 주방, 침실1)은 공기청정기능이 없는 냉방 전용 제품으로 기본 설치 되며, 그 외 실의 추가 시스템 에어컨 및 공기 청정 기능 선택은 유상 옵션 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이며 안방 및 거실에만 냉매배관 적용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샤워(에어브러쉬 포함)는 유상옵션이며, 제조사,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은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샤워(에어브러쉬 포함)는 타입에 따라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설치된 온도, 환기 조절기는 제조사 및 설치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주방에 설치된 전해수 살균 수전은 유상옵션이며, 제조사 및 설치 위치 등은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적용 유무에 따라 싱크대 사양이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 설치된 슈퍼 공기질 제어 시스템 패드의 제조사 및 설치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취사용 가스배관 본 공사시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노출배관(휴즈콕 마감) 이후 가스배관 연결 공사는 입주자 공사 분으로, 가스레인지 배관 연결을 위해 가구의 타공이 필요할 수 있음.
- 침실이 인접한 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외벽면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공급안내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예정)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하부에 필터 교체 등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설치부분의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창호의 크기, 재질 및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84E, 84F 상부층에는 현관 옆 복도 붙박이장 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붙박이장 하부 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입 주방가구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상부장과 천장사이 공간으로 주방 렌지후드 연도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니 계약시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5㎡타입 침실1 화장실을 드레스룸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구조상 수납공간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확인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용도실 또는 세탁실은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 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의 복도, 외벽 및 계단실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대 공급용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음.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하며, 관리단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써 상가 입점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에 설치되는 빗물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세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및 배기장치로 인한 당해 세대 및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 신발장, 샤워실 일부 화장실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설치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인조대리석 및 석재 / 타일 자재의 경우 제조과정에 따라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 사항이 아님.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 (세대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Dry Area_급배기타워)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과 인접하거나 면해있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니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조정 및 민원을 제기할수 없음
- D/A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학생배치 관련 사항 -

가. 초등학교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구운초등학교이며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나. 중학교

- 중학교의 경우 북부중학군 3구역[구운중, 율현중, 서호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고등학교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가능하며 수원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학교설립과-11558(2020.12.1.)」내용에 따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2.7M**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GX룸, 키즈라이브러리, 셀프세차장 등**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구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고기밀창호 | 적용 |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은 기밀성능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
|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고효율 펌프, 전동기 적용 |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
| |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세대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
| |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단지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절수설비 | 적용 |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설치 |

1) 의무사항 준수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함.

2) 설계조건 충족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제7조제2항 따라 벽체 및 창호성능이 친환경주택 단열 및 기밀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열원설비 및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 창면적비의 기준을 만족함.

## Ⅶ 기타 주요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시설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명칭 :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분양보증

▣ 분양보증금액 및 보증서 번호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82021-101-0005400호 | 일금 일천칠백칠십팔억구천사백오십만원정<br>(₩ 177,894,500,0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분양보증약관(제정2014.07.31., 개정 2017.11.27.)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구분 | 내용 |
|---|---|
| **보증채무의 내용**<br>(분양보증약관 1조)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br>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br>【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br>【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br>【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br>【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br>(분양보증약관 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br>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br>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br>【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br>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br>【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br>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br>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br>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 |

| | |
|---|---|
| |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br>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br>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br>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br>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br>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br>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br>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br>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br>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br>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br>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br>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br>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br>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br><br>**【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br>(분양보증약관 4조) | **제4조 (보증사고)**<br>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br>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br>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br>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br>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함.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오캄"이 "교보자산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오캄"임을 계약자는 인지해야 함.
2. 본 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는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공급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오캄"이 부담함.
3. "㈜오캄"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교보자산신탁㈜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오캄"(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함.
5.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 분 | 감리회사명 | 감리금액(원, VAT포함) | 사업장 소재지 |
|---|---|---|---|
| 전기/소방/통신 | ㈜대경기전 | 일금 삼억팔천오백만원정<br>(₩385,000,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81 (간석동, 3층) |
| 건축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 일금 구억사천육백만원정<br>(₩946,000,0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에이동 4층<br>(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회 사 명 | 주 소 | 연락처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신탁사)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대치동, 대치타워) | 02-3404-3404 | 110111-1617434 |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 (시행사) | 주식회사 오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북로 81, 204호(용계동) | 070-4278-5626 | 160111-0546147 |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02-2134-1114 | 110111-2153015 |
| 분양대행사 | 신일산업개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3층(역삼동) | 02-501-4303 | 121111-0086281 |

▣ 사이버 견본주택 : www.hillstate-suwonterrace.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7

▣ 현장 및 견본주택 약도

▣ 분양문의 : ☎ 1600 – 0767

**현장 위치도**




현장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25-30번지 일원

**견본주택 위치도**




견본주택 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7번지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당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본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